

프로젝트 한강을 위한 예금토큰거래기본약관

이 프로젝트 한강을 위한 예금토큰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프로젝트 한강에 참가한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가 예금 토큰 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은행 홈페이지 및 전자지갑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서비스(이하 “예금 토큰 거래”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 토큰”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하 “디지털화폐”라 한다) 등을 발행·유통하는 시스템(이하 “디지털화폐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지갑”이란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의 보유 및 이전을 위한 이용자의 예금 토큰 계정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 개인사업자,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이용자로 선정된 자로서, 은행과 예금 거래에 관한 계약 및 예금 토큰 거래에 관한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 예금 토큰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4. “전환”이란 이용자의 예금 차감에 따른 동일한 금액의 예금 토큰 발행 또는 예금 토큰 환수에 따른 동일한 금액의 예금 예치를 말한다.
5. “자동전환”이란 이용자의 신청 또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 또는 은행이 지정한 금액 대비 부족액, 상당액을 자동적으로 예금 토큰 또는 예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예금 토큰 거래”란 이용자가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또는 예금 토큰을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하는 거래, 이용자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제3자(이하 “사용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7. “접근매체”란 예금 토큰 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프로젝트 한강(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참가 은행에게 발행하여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의 이전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① 예금 토큰 거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3.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은행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예금 토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 토큰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위험고지 및 동의) ① 예금 토큰 거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험운영 중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전자지갑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 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는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책임 등) ① 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6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거래) ① 이용자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은행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지갑의 개설, 예금 토큰의 이전 및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 등 예금 토큰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용자

정보	자료
신원정보 :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장정보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추가정보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 현황 등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 문서 (재직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2. 법인·단체(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용자

정보	자료
신원정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추가정보 : 실소유자(주요주주 및 임원 등)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 목적, 자금원천, 기부관련 정보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 법 인 [단 체] 문서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② 은행은 예금 토큰 거래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자료 외에 추가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고객확인의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검증을 다시 이행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및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금 토큰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거래장소와 거래방법) 이용자는 모든 예금 토큰 거래를 전자지갑 앱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9조(전자지갑 개설 제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용자는 예금 토큰 거래를 위하여 은행에 하나의 전자지갑만 개설할 수 있다. 단, 이외의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연계계좌의 지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전자지갑과 연계할 은행의 계좌(이하 “연계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계계좌는 이용자 명의의 수시입출금계좌에 한한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갑에 하나의 연계계좌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연계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전자지갑의 예금 토큰 잔액을 모두 연계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한 후 연계계좌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예금 토큰에 대한 잔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도 은행은 전항의 절차에 따라 연계계좌의 잔액증명서로 발급한다.

⑤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지갑의 예금 토큰 잔액을 모두 연계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전자지갑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연계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번호 등의 신고) 이용자는 예금 토큰 거래를 시작할 때 접근매체,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예금 토큰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접근매체(비밀번호·인증서 등)는 전자지갑 앱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예금 토큰 및 예금 간 전환 신청) ① 이용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본인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또는 예금 토큰을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예금 토큰을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금은 제10조의 연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말한다.

③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이용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최대 1천만원을 보유한도, 총 1억원을 전환한도로 하여 자신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이용자의 경우 보유한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전환 신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즉시 전환하여야 한다.

제13조(예금 토큰 전환 시기) 예금은 이용자의 전환 신청 혹은 자동전환으로 은행의 예금 토큰 원장(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연동된 기록장치)에 예금 토큰 발행이 기록된 때 예금 토큰이 된다.

제14조(예금 전환 시기) 예금 토큰은 이용자의 전환 신청 혹은 자동전환으로 은행의 예금 원장에 입금이 기록된 때 예금이 된다.

제15조(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제13조에 따라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날부터 제14조에 따라 예금 토큰을 예금으로 전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이율표를 전자지갑 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전자지갑 앱 및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이용자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6조(전환·해지청구) 이용자가 제12조의 전환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예금 토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지갑 앱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자동해지) ① 은행과 이용자 간 예금 토큰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프로젝트의 종료 후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에 해지되고, 은행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이용자의 예금 토큰 잔액을 연계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한다.

② 은행이 프로젝트 종료 이전에 동 프로젝트 참가를 중단하는 경우, 예금 토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 토큰 잔액을 연계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한다.

③ 프로젝트 기간 중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금융사고자금 거래정지)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연계계좌로 입금되어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이용자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거래정지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기간은 거래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거래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거래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거래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1항의 거래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 거래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이용자가 예금 토큰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예금으로 전환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토큰으로 이전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거래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상계 및 질권설정 금지) 이용자는 예금 토큰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예금 토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0조(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류 등) ① 전자지갑 또는 연계계좌에 대해 압류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 토큰 잔액을 연계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한다.

② 이용자에 대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1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는 인감 또는 서명, 접근매체,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접근매체(비밀번호·인증서 등)는 서면신고 없이 전자지갑 앱을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갑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존 접근매체를 통한 본인확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접근매체로 변경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예금 토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③ 이용자는 예금 토큰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
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예금 토큰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예금 토큰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25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예금 토큰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예금 토큰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금 토큰 이용 거래) ① 이용자는 사용처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예금 토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인 양 이용자 사이
의 합의에 따라 예금 토큰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용자는 사용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예금 토큰으로 그 대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지갑 앱 및 웹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시를
해야 한다.

③ 예금 토큰 이용 거래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1항의 거
래를 취소하여 사용처가 이용자에게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예금 토큰 이전 거래) ① 이용자는 제2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외에 타인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②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개인사업자 이용자의 전향에 따른 이전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500만원으로 한다. 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법인 이용자의 경우 인터
넷뱅킹 1회 10억, 1일 50억, 모바일뱅킹 1회 1억, 1일 5억으로 한다.

제27조의2(예금 토큰 착오이전에 대한 협조의무) ① 제2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대금의 지급 외에 타인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착오로 금액, 수
취인의 전자지갑이 개설된 은행, 수취인 전자지갑의 명칭 및 주소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이전(이하 "착오이전"이라 한다)하였음을 은행에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와 수취인의 전자지갑이 모두 동일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즉시 수취인
에게 착오이전 사실 및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착오이전을 한 이용자
에게 알린다.
2. 수취인의 전자지갑이 다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의 전자지갑이 개설된
은행에 즉시 착오이전 사실을 알리고, 그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착오이전을 한 이용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의 착오이전에 대하여 수취인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착오이

전을 한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약관에 따른 예금 토큰의 착오이전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착오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지원의 대상, 금액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는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거래 가능 시간)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 예금 토큰 거래를 할 수 있다.

- ② 거래 가능 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거래 가능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예금 토큰 거래의 처리시점에 전자지갑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예금 토큰 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예금 토큰 거래의 처리시점에 송금 또는 수취 전자지갑이 해지되었거나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거래정지전자지갑에 편입되었을 때
 3. 예금 토큰 거래 지시일에 연계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또는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 ② 은행이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예금 토큰 거래를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예금 토큰 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지갑 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 토큰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예금 토큰 거래를 위해 제25조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거쳐 은행의 예금 토큰 원장(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연동된 기록장치)에 출금의 기록이 된 때에 거래가 성립한다.

제31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전자지갑 주소,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이용자가 신청한 예금 토큰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제32조(거래지시의 철회 제한) 은행은 실시간으로 이전되는 예금 토큰 거래에 대해 거래 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예금 토큰 거래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거쳐 수취인의 전자지갑이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예금 토큰 원장(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연동된 기록장치)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34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33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의 전자지갑 앱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예금 토큰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예금 토큰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제36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예금 토큰 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자지갑의 명칭 또는 주소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거래 관련 수수료
5. 예금 토큰 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6. 해당 예금 토큰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예금 토큰 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37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예금 토큰 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38조(준수사항) 예금 토큰 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39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1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예금 토큰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거래대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은행은 스스로 예금 토큰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예금 토큰 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예금 토큰 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 전자지갑으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 또는 제25조에 따른 인증 내용 등이 신고한 것과 같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 예금 토큰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이용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용자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컴퓨터·전화기 등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 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지갑 주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이용자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 주의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 토큰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이용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은행이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 주의깊게 본인확인한 전자지갑은 이용자의 실명확인 증표나 서류가 위조·변조·도용되는 등의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가 제21조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⑥ 제3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예금 토큰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예금 토큰 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44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예금 토큰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은행이 예금 토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편 송달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 토큰 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이용자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예금 토큰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이용자가 제21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 토큰 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전자지갑, 접근매체 및 예금 토큰 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진다.

제46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전자지갑 앱,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변경된 약관등을 전자지갑 앱 및 홈페이지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이용자에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이용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이용자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 알린다.

1. 이용자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이용자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이용자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이용자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워치 등)에 의한 통지
4. 전자지갑 앱 내에 통지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전자지갑 앱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 토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4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적용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